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오지환 의원 발의 )

의안 번호	472
----------	-----

발의연월일 : 2026.03.13.

발 의 자 : 오지환 의원(1명)

찬 성 자 : 김지훈·안병두·박미정·  
이은경·이형준·안종숙·  
유지웅(의원)  
(총 7명)

## 1. 제안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 시설 설치 의무 대상 확대와 함께 대상시설 외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성 개선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설치 이후 관리 체계가 미흡해 이용 불편이 반복되는 실정임.

이에 편의시설의 점검을 강화하고 설치 지원과 유지관리를 통합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 편의시설 관리의 실효성 제고와 이동약자의 공중 이용시설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 (안 제1~2조)
- 다. 구청장의 책무와 시설주의 의무 규정 (안 제3~4조)
- 라. 편의시설 설치 지원과 점검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6조)
- 마. 편의시설 점검결과 및 지도·감독 사항 규정 (안 제7~8조)
- 바. 점검업무 대행,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10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3,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23조, 제24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조례안 예고 예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노인·임산  
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는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제6조에 따른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장 안내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시설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대상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한 경사로 등을 설치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시설의 범위와 종류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①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로 한다.

②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시설주의 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결과의 보고 등)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합성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점검과 그 밖에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이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대행) 구청장은 업무의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실시) ①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적정한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주 및 점검요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

※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건축명	
대지위치	
대지면적	지역·지구
건축면적	층수
당해 연면적	용도
구조	공사종별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대상		설치		미설치	특이사항
		의무	권장	적정설치	부적정설치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내부시설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	화장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안내시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기타시설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종합의견						

[붙임]

# 관 계 법 령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2. 21.)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5.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
  -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
  -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8.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설치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제15조(적용의 완화)** ① 시설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이하 이 조에서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할 때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2.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안전 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상시설의 용도와 주변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승인할 때에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시정명령 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이행강제금)**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이행강제금의 금액

2. 부과 사유

3. 납부기한

4. 수납기관

5. 이의 제기 방법

6. 이의 제기 기관

⑤ 시설주관기관은 최초로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시설주관기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01. 02.)

**제7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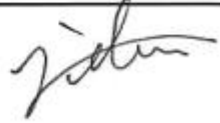




②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

부하여 해당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용의 완화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노인·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지환 의원 발의)서명부

발 의 자		찬 성 자	
의 원 명	서명·날인	의 원 명	서명·날인
오지환		김지훈	
		안병두	
		박미경	
		이문영	이문영.
		이형준	
		안종복	
		유지웅	유지웅